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세채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 침체된 경기회복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 산업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시책 개발
 -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지도단속과 개선대책 강구
 - 지역건설업체 수주 증대
-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과당 경쟁 지양과 건설부조리 근절
 - 부실 설계·시공 방지와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
- 지역 건설산업체의 등록 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정례화 (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안 제6조)

4. 참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8호)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은

-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지원시책 개발
 -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지도단속과 개선대책 강구
 - 지역건설업체 수주 증대
 - 공동계약 비율 49%,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장 및 지역 업체 건설중기 사용 권장
 - 지역건설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권장
-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과당 경쟁 지양과 건설부조리 근절
 - 부실 설계·시공 방지와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
- 지역 건설산업체의 등록 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정례화 (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안 제6조)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지역건설업체 수주 증대 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건설 산업의 발전과 건설 산업 경기부양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업체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